

YUN HOJUNG

윤호중

648-ho, Lawmakers hall, 1,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CODE 07233

2021 년 5 월 10 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애하는 윤호중 의원님께,

프로스타시아 재단은 아동 성 학대 예방에 대하여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지지하는 아동 보호 단체입니다. 저희는 현재 여성가족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 2107951 과 2107275 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편지를 드립니다. 이 법안들은 19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닮은 리얼돌의 소유 또는 판매를 범죄화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동 보호 단체로서, 이 법안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실제의 아동·청소년을 성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바람으로 제안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증거에 기반하면서도 합헌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로서, 이 법안들은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려합니다.

첫째, 이 법안들은 실행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들은 표면상으로 19 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닮은 리얼돌을 대상으로 하지만, 18 세나 19 세를 닮은 인형과 성인을 닮은 인형을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주로 18 세나 19 세에 끝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실질적인 영향은 단지 아동·청소년 뿐만이 아닌 모든 성 인형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법안의 최종 목표는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 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만, 아동·청소년에게 끌리도록 하는 수단을 금지하는 것이 실제로 아동 성 학대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관념론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뉴욕 주립 대학교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리얼돌 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이런 기구를 사용하면서 아동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구가 그런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어 실제 아동을 향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법안들의 논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더라도, 가정된 사실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분명히 위험적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본 떠 만든 전신 인형”의 수입을 막는 것은 위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리얼돌이 음란물과 같은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¹ 성인용품은 자위를 보조하기 위해 사적으로 사용되며, 이것의 사용은 제 3 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자위하는 방식을 정부가 규제할 권력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¹https://legalengine.co.kr/cases/DKNLpV7rCJJ_BcgAUitOYQ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2524344>

사적 차원의 성인용품을 규제하는 입법을 고려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고결함을 떨어뜨립니다. 훨씬 더 나은 접근방식은 민간 영역이 아동 보호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러한 성격의 소형 기구 판매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스타시아 재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단체로서,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성인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동 성 학대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일련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력해 왔습니다.

위의 법안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지만 설득력 있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실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초래할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하기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의 법률이 이 주제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아동 보호 단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법안들은 좋게 보아도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기구들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방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저희는 의원님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의안 2107951 및 의안 2107275에 반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신 제 2 조 5 호의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이 법의 취지가 예술·소설·인형 등의 허구적인 캐릭터 형태의 아동·청소년 표현을 범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 1903875의 재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프로스타시아 재단, 사무총장
제레미 말콤